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재난방지법시행규칙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제작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등록하도록 규정

나.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

다.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산불위험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거나, 변경·해제한 때에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마.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바.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세부 목록을 규정

사.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 사업을 규정

아.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규정

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관은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한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차.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카.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수행 내용 및 방법을 규정

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열람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한 경우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하도록 규정

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결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

거.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항공예찰과 지상예찰로 구분되며,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도록 규정

너.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안 제17조)

-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에 대한 사항 마련

더.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

러.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불 진화 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산불진화 완료 시 보고 절차 마련

머. 산불대응 단계 발령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산불대응 단계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발령하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

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해 5개 반을 편성·운영하며, 산불현장에 지원된 항공기를 총괄 지휘하도록 규정

서.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무선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어. 산불진화진화단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시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저. 산사태등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처. 산사태대응팀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5조)

-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하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규정

터.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퍼.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규정

허.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리도록 규정

고.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시 이행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 산림병해충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로 이행기간 규정

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 그 방제 결과를 매 분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도.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설계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

로.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기준 및 감리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

모.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에 대한 응급조치, 복구 또는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 산사태등 피해 복구 시 동의 등에 관한 규정(제 36조)

-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등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 사용 동의요청 기간을 20일로 규정

오.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 산림병해충별 조사요령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초. 산림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안 제40조)

-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목적으로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토. 산림항공기 비행 지시 등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는 경우 비행 지시 및 운영계획·정비,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포.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42조)

- 산불방지 및 산사태등 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교육계획 수립·실시,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마련

호.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시행할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

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 재산목록 및 집행실적 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필요한 서류 규정

누.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관을 규정

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 산림재난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및 세부절차 규정

루. 과태료 부과 기간 규정(안 제47조)

-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은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 확산 요인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생태 구조에 관한 사항
4. 거주인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임도 포함), 사방시설 등 재난 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는 등급화 및 위험구역의 표시 등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④ 산림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등록하는 것으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배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재난별 위험도평가 기준 등의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산림재난피해지 분석 정보
2. 산림재난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 위성 관측망의 수집정보
4. 산림수계 및 산림유역 정보
5. 산악기상관측정보

② 그 밖에 필요한 산림재난 관련 정보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당부 사항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 진화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소화시설 설치·운영
2.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3.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4.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5.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6.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7.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
2.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출입 등을 위한 임도의 구조개량 사업
3. 산불감시원 배치
4. 산불진화장비 배치
5. 사전 대피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2.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진화자원 현황
3.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의 작성
4. 현장조사와 산림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의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농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 ④ 제3항에 따라 불농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2.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3. 임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구조개량 사업
4. 다층혼효림 조성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5.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 실태조사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
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
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
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지정 예정지 도면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도면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면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도면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11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 2를 따른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 ②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정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방법·시기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별표 3의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시기: 별표 3에 따른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
2. 조사내용: 별표 4에 따른 발생밀도 조사요령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
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
3. 수목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 (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 또는 지역주민의 발생 제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8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 인명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등) ① 산불대응 단계는 산불상황관제시스

템으로 발령하며 팩스 또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산불진화자원은 산불대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원한다.
- ③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린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해야 한다.

④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

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산불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 등의 교육·훈련)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산사태등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사태대응팀 등의 교육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라 산사태등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1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등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이동·유통·판매 제한 등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서류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방제방법의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문서(산림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소유자에게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① 제27조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이동제한, 사용금지, 곤충 등 동물의 방제, 유통·판매 제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이동제한, 사용금지, 곤충 등 동물의 방제, 유통·판매 제한)를 제출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방제방법의 기준에 맞게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문서(산림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
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말한다.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의 고시내용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항구적인 복구 또는 복원
2. 산사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시 응급 복구
3.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 등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복원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토지사용동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 사용 동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 산림병해충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3 이외 병해충은 별표 5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지역별·피해도별로 산림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특별방제구역: 법 제4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2. 중점관리지역: 국립공원·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및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 주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주요지역: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 등 주요임산물 생산지·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우량소나무림 등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일반지역: 특별방제구역, 중점관리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산림항공기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① 법 제55조제1항의 목적으로 산림항

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도

2. 화물명세 또는 탑승자명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② 제39조 각 호에 따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시 승무원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제41조(비행 지시) ① 산림청장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정비·사고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불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1.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3.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④ 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산림재난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산림재난 분야의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 산림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2.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3.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5. 산림재난 예방·대응·조사 및 복구 요령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할 경우 제4항에 따른 해당 산림재난 분야의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예산과 결산)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45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

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영 제4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망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의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방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③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산림보호법」 제23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산림보호법」 제24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보호법」 제25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3제2항제5의3호라목 중 “「산림보호법」 ”을 “「산림재난방지법」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령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 확산 요인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생태 구조에 관한 사항
4. 거주인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임도 포함),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는 등급화 및 위험구역의 표시 등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④ 산림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등록하는 것으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배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재난별 위험도평가 기준 등의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산림재난피해지 분석 정보
2. 산림재난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수집정보
4. 산림수계 및 산림유역 정보
5. 산악기상관측정보

② 그 밖에 필요한 산림재난 관련 정보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당부 사항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④ 중앙산불방지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⑤ 중앙산불방지협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⑦ 지역산불방지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 ⑧ 지역산불방지협회의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⑨ 지역산불방지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 ⑩ 지역산불방지협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 진화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소화시설 설치·운영
2.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3.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4.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5.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조성
6.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7.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
2. 산불진화차량의 진·출입 등을 위한 임도의 구조개량 사업
3. 산불감시원 배치
4. 산불진화장비 배치
5. 사전 대피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2.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진화자원 현황
3.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의 작성
4. 현장조사와 산림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의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 ④ 제3항에 따라 불농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2.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3. 임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구조개량 사업
4. 다층혼효림 조성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5.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규모
 -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 실태조사
 -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 다.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항공기·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

접조사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2. 지정 예정 연월일
 - 3. 지정 예정지 도면
 -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도면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면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 2.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 3. 지정·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도면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11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 2를 따른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전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정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③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방법 · 시기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별표 3의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시기: 별표 3에 따른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
 2. 조사내용: 별표 4에 따른 발생밀도 조사요령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
 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
 3. 수목의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 또는 지역주민의 발생 제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8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 인명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등) ① 산불대응 단계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발령하며 팩스 또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산불진화자원은 산불대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원한다.

③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린다.

④ 제1항에서 제3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 ③ 시·도 및 시·군·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해야 한다.
- ④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산불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 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 등의 교육·훈련)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산사태등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사태대응팀 등의 교육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라 산사태등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1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등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이동·유통·판매 제한 등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서류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방제방법의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문서(산림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소유자에게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① 제27조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이동제한, 사용금지, 곤충 등 동물의 방제, 유통·판매 제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이동제한, 사용금지, 곤충 등 동물의 방제, 유통·판매 제한)를 제출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방제방법의 기준에 맞게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문서(산림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
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말한다.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의 고시내용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항구적인 복구 또는 복원
2. 산사태,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시 응급 복구
3.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 등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복원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서는 별표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 사용 동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별표 4의 산림병해충 발생밀도 조사요령(별표 3 이외 병해충은 별표 5의 발생밀도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에 따라 병해충별·지역별·피해도별로 산림병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1. 특별방제구역: 법 제4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2. 중점관리지역: 국립공원·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및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 주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주요지역: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 등 주요임산물 생산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우량소나무림 등 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일반지역: 특별방제구역, 중점관리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산림항공기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① 법 제55조제1항의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도
2. 화물명세 또는 탑승자명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② 제39조 각 호에 따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시 승무원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제41조(비행 지시) ① 산림청장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정비·사고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 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불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1.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3.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④ 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산림재난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산림재난 분야의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 산림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2.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3.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5. 산림재난 예방·대응·조사 및 복구 요령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할 경우 제4항에 따른 해당 산림재난 분

야의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예산과 결산)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45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영 제4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망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의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방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③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산림보호법」 제23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산림보호법」 제24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보호법」 제25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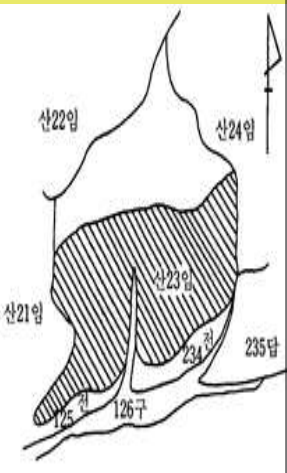
제115조의3제2항제5의3호라목 중 “「산림보호법」 ”을 “「산림재난방지법」 ”으로 한다.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제7조 관련)

구분	내용
1. 항공진화장비	산불진화 헬리콥터, 고정익(固定翼) 항공기, 진화용 드론 등 공중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2. 지상진화장비	가.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소화시설 등 지상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나. 등짐펌프, 진화배낭, 진화복 등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비
3. 통신장비	무선중계기, 고정국(固定局), 육상국(陸上局) 등 통신기, 디지털단말기 등 산불진화현장의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4. 그 밖의 진화장비	그 밖의 산불진화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장비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제13조제7항 관련)

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이 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 : 00군 00면 00리 00번지 ○ 지정일자 : 2000. 00. 00. ○ 대피소 : 00군 00면 00리 00번지(00마을회관)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위치도 
문의 : 000시청(T. 000-000-0000) 000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	

2.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방법

가. 규격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씨: 검정색으로 하되,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

3) 기둥: 노란색

4)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함.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관련)

구분	병해충별(피해도 구분)	조사시기	월 별								
			3	4	5	6	7	8	9	10	11
해충	솔잎혹파리(충영형성율)	9~11월									
	솔껍질각지벌레(외견적 피해율)	3~5월									
	솔나방(유충밀도)	4~6월 9~10월									
	미국흰불나방(유충 군서개소)	5~9월									
	오리나무잎벌레(알덩이밀도)	5~7월									
	잣나무넓적잎벌(토중 유충밀도)	3~4월									
	솔알락명나방(피해 구과율)	6~7월									
	버즘나무망패벌레((수관부위(가지와 잎이 달려 있는 부분) 피해면적))	6~8월									
	소나무좀(성충밀도)	3~4월 7~9월									
	밤나무해충(피해 밤송이 비율)	8~9월									
	붉은매미나방(유충밀도)	6~7월									
	매미나방(유충밀도)	4~6월									
	꽃매미(월동난, 약·성충)	3월, 7월									
	갈색날개매미충(월동난, 약·성충)	3월, 7월									
	미국선녀벌레(약·성충)	7월									
	기타해충	4~9월									
병해	참나무시들음병	5~9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4~6월									
	피목가지마름병	4~5월									
	벗나무빛자루병	4~5월									
	아밀라리아뿌리썩음병	5~8월									
	리지나뿌리썩음병	5~8월									
	이팝나무녹병	4~7월									
	호두나무갈색썩음병	6~8월									
	기타병해	4~9월									

산림병해충별 발생밀도(피해도) 조사요령 (제17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관련)

병해충명	구분방법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조 사 요 령
		심	중	경	
솔잎혹파리	충영형성율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대상지 내 피해 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목 5본을 전구역에서 고루 선정 2. 조사목 1본당 4방위에서 중간부위의 가지 1년생 신초(그 해에 자란 새 가지) 2가지씩 채취(5본×4방×2가지=40가지 채취) 3. 채취된 가지 위에 붙어 있는 총 잎수와 충영이 형성된 잎수를 계산 $\text{충영형성율} = \frac{\text{충영형성 잎수}}{\text{총 잎수}} \times 100$
솔껍질 깎지벌레	외견적 피해율에 의한 구분	30% 이상	10~30% 미만	10% 미만	1. 조사대상지 내 피해 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목 30본을 전구역에서 고루 선정 2. 조사목당 적갈색으로 변색된 잎의 가지나 고사된 가지수를 계산 $\text{피해율} = \frac{\text{피해받은 가지수}}{\text{총 가지수}} \times 100$
솔나방	유충의 서식수에 의한 구분	<봄철> 1가지당 1마리 이상	2가지당 1마리	2가지당 1마리 미만	1. 조사대상지 내 발생 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대상목 20본을 전구역 내에서 고루 선정 2. 선정된 조사목의 수관상부와 하부에서 직경×길이가 100m ² 정도 되는 가지 1개씩을 택하여 가지 위에 있는 유충수를 센다. 3. 전 조사본수의 유충수를 합계하여 평균한 수(총마리수÷조사본수)로 그 임지에서의 발생밀도를 판정한다.
		<가을철> 1가지당 2마리 이상	1가지당 1마리	1가지당 1마리 미만	
미국 흰불나방	유충의 군서개소(충소수)에 의한 구분	1나무당 5개 이상	1나무당 2~4개	1나무당 1개 이하	1. 조사대상지 내 2본당 1본 간격으로 총 50본의 조사목을 선정 2. 조사목의 유충 군서개소(충소수)를 조사
병해충명	구분방법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조 사 요 령
		심	중	경	
오리나무 잎벌레	알덩이밀도에 의한 구분	100엽당 5.2개	100엽당 21~51개	100엽당 2.0개	1. 조사대상지 내에서 30본의 조사목 선정 2. 조사목 상부에서 100엽, 하부에서 200엽

		이상		이하	을 채취하여 100엽당 알덩이수를 조사
잣나무 넓적잎벌	토중 유충수에 의한 구분	m ² 당 150마리 이상	m ² 당 91~149 마리	m ² 당 31~90 마리	1. 조사대상지 내에서 1.0×1.0m의 조사구 5개소씩을 선정 2. 지표면으로부터 30cm 깊이까지 땅을 파면 서 토중 유충수 조사
솔알락 명나방	피해구과 (소나무과 식물의 열매) 비율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대상지 내에서 피해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목 5본 선정 2. 전 조사본수의 구과수를 세고 그 중에 피해 구과수 계산 피해받은 구과수 3. 피해율= $\frac{\text{피해받은 구과수}}{\text{총 구과수}} \times 100$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관부의 피해면적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대상지 내 2본당 1본 간격으로 총 50본 의 조사목을 선정 2. 전 조사본수의 수관부 총 면적을 조사하 고 그 중에 피해면적 계산 수관부 피해면적 3. 피해율= $\frac{\text{수관부 피해면적}}{\text{수관부 총 면적}} \times 100$
복숭아 명나방	피해밤송이 비율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대상지 내에서 피해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목 5본 선정 2. 전 조사본수의 밤송이수를 세고 그 중에 피해 밤송이수 계산 피해받은 밤송이수 3. 피해율= $\frac{\text{피해받은 밤송이수}}{\text{총 밤송이수}} \times 100$
꽃매미	약·성충수 (애벌레와 어른벌레)에 의한 구분	30마리 이상	10~30 마리 미만	10마리 미만	1. 실 발생면적을 조사·확정하고 발생상황의 표준 이 되는 지역을 선정 2. 목본성, 초본성 기주식물을 중심으로 30본을 육안조사하여 약충과 성충의 평균 마리수 를 계산
병해충명	구분방법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조 사 요 령
		심	중	경	
갈색날개 매미충	약·성충수에 의한 구분	30마리 이상	10~30 마리 미만	10마리 미만	1. 실 발생면적을 조사·확정하고 발생상황의 표준 이 되는 지역을 선정 2. 목본성, 초본성 기주식물을 중심으로 30본을 육안조사하여 약충과 성충의 평균 마리수를 계산
미국	약·성충수에	30마리	10~30	10마리	1. 실 발생면적을 조사·확정하고 발생상황의

선녀벌레	의한 구분	이상	마리 미만	미만	표준이 되는 지역을 선정 2. 목본성, 초본성 기주식물을 중심으로 30분을 육안조사하여 약충과 성충의 평균 마리수를 계산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본수 및 천공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조사 2. 피해목별로 4방위에 대해 수고 1m 이하에 서 투명판(크기: 20×20cm, 면적: 400cm ²) 내 천 공수를 조사한 후 평균 천공수를 계산 1) ‘가’ : 35개 이상/400cm ² 2) ‘나’ : 5~35개 미만/400cm ² 3) ‘다’ : 5개 미만/400cm ² 3. 피해율=[5×(‘가’의 본수) + 3×(‘나’의 본수) + 1×(‘다’의 본수)] / (총 조사본수×5)×100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본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피해본수를 조사 2. 피해율= $\frac{\text{피해본수}}{\text{총 조사본수}} \times 100$
피목가지 마름병	피해본수 및 피해가지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조사 2. 피해가지의 수로 피해목별 피해도를 조사 1) ‘가’ : 5개 이상 2) ‘나’ : 3~5개 미만 3) ‘다’ : 3개 미만 3. 피해율=[5×(‘가’의 본수) + 3×(‘나’의 본수) + 1×(‘다’의 본수)] / (총 조사본수×5)×100
병해충명	구분방법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조 사 요 령
		심	중	경	
벚나무 빛자루병	피해본수 및 피해증상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조사 2. 총생 증상의 수로 피해목별 피해도를 조사 1) ‘가’ : 5개 이상 2) ‘나’ : 3~5개 미만 3) ‘다’ : 3개 미만 3. 피해율=[5×(‘가’의 본수) + 3×(‘나’의 본수) + 1×(‘다’의 본수)] / (총 조사본수×5)×100
아밀라리아 뿌리썩음병	피해본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피해본수를 조사 피해본수

					2. 피해율= $\frac{\text{피해본수}}{\text{총 조사본수}} \times 100$
리지나 뿌리썩음병	피해본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피해본수를 조사 2. 피해율= $\frac{\text{피해본수}}{\text{총 조사본수}} \times 100$
이팝나무 녹병	피해본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산림 10m×15m, 가로수 3m×50m) 선정 2. 피해율= $\frac{\text{피해본수}}{\text{총 조사본수}} \times 100$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피해본수 및 피해잎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15m)에서 조사 2. 육안 피해엽량으로 피해목별 피해도를 조사 1) ‘가’ : 50% 이상 2) ‘나’ : 20~50% 미만 3) ‘다’ : 20% 미만 3. 피해율= $\frac{\{5 \times (\text{‘가’의 본수}) + 3 \times (\text{‘나’의 본수}) + 1 \times (\text{‘다’의 본수})\}}{(\text{총 조사본수} \times 5)} \times 100$

산림병해충별 발생밀도(피해도) 조사 기준이 없는 기타병해충에 대한 조사요령

(제37조제1항 관련)

구 분	구분방법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조 사 요 령
		심	중	경	
식엽성 해충에 대한 피해도 조사	나비목 등 식엽성해 충의 경우 피해엽 면적에 대해 구분	50% 이상	20~ 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 × 15m)에서 조사 2. 육안 피해엽량으로 피해목별 피해도를 조사 1) ‘가’ : 50% 이상 2) ‘나’ : 20~50% 미만 3) ‘다’ : 20% 미만 3. 피해율 = $\{[5 \times (\text{‘가’의 그루수}) + 3 \times (\text{‘나’의 그루수}) + 1 \times (\text{‘다’의 그루수})]\} / (\text{총 조사 그루수} \times 5) \times 100$
천공성 해충에 대한 피해도 조사	피해 그루수 및 천공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 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 × 15m)에서 조사 2. 피해목별로 4방위에 대해 수고 1m 이하에서 투명판 (크기 20 × 20cm, 면적 400cm ²) 내 천공수를 조사한 후 평균 천공수를 계산 1) ‘가’ : 35개 이상 / 400cm ² 2) ‘나’ : 5~35개 미만 / 400cm ² 3) ‘다’ : 5개 미만 / 400cm ² 3. 피해율 = $\{[5 \times (\text{‘가’의 그루수}) + 3 \times (\text{‘나’의 그루수}) + 1 \times (\text{‘다’의 그루수})]\} / (\text{총 조사 그루수} \times 5) \times 100$
종실가해 해충에 대한 피해도 조사	피해종실 비율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 50% 미만	20% 미만	1. 조사대상지 내에서 피해정도가 평균이 되는 조사목 5그루 선정 2. 조사목 1그루당 4방위에서 1가지의 종실수를 세고 그 중에 피해 종실수 계산 3. 피해율 = 피해받은 종실의 수 / 총 종실수 × 100
흡즙성 해충에 대한 피해도 조사	약·성충수 에 의한 구분	1,000 마리 이상	100~1, 000 마리 미만	100 마리 미만	1. 실 발생면적을 조사·확정하고 발생상황의 표준이 되는 지역을 선정 2. 목본성, 초본성 기주식물을 중심으로 30그루를 육안조사하여 약충과 성충의 평균 마리수를 계산
구 분	구분방법	발생밀도(피해도) 구분			조 사 요 령
		심	중	경	
뿌리·줄기 에 발생하는	피해본수 및	50% 이상	20~ 50%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 × 15m)에서 조사

병해, 시들음 병해, 전신감염성 ¹ 병해에 대한 피해도 조사	피해증상 에 의한 구분 (바이러스, 파이토플 라스마 등)		미만		2. 피해율 = $\frac{\text{피해 그루수}}{\text{총 조사 그루수}} \times 100$
가지에 발생하는 병해에 대한 피해도 조사	피해본수 및 피해가지 수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 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 × 15m)에서 조사 2. 피해가지의 수로 피해목별 피해도를 조사 1) ‘가’ : 5개 이상 2) ‘나’ : 3~5개 미만 3) ‘다’ : 3개 미만 3. 피해율 = $[(5 \times (\text{‘가’의 그루수}) + 3 \times (\text{‘나’의 그루수}) + 1 \times (\text{‘다’의 그루수})) / (\text{총 조사 그루수} \times 5)] \times 100$
잎·과실에 발생하는 병해에 의한 피해도 조사	피해본수 및 피해잎수 에 의한 구분	50% 이상	20~ 50% 미만	20% 미만	1. 조사지 3개소(10 × 15m)에서 조사 2. 육안 피해엽량으로 피해목별 피해도를 조사 1) ‘가’ : 50% 이상 2) ‘나’ : 20~50% 미만 3) ‘다’ : 20% 미만 3. 피해율 = $[(5 \times (\text{‘가’의 그루수}) + 3 \times (\text{‘나’의 그루수}) + 1 \times (\text{‘다’의 그루수})) / (\text{총 조사 그루수} \times 5)] \times 100$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제38조 관련)

1. 주요 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시기

구 분		방제시기
주요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시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당해 연도 10~12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다음 연도 2~4월
	나무주사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	방제 다음 연도 6~10월

2.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조사내용	나무주사	나무주사 실행본수 대비 피해목 발생본수, 나무주사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설정)
	약제살포	매개충(해충)의 방제효과(약제살포 전후 밀도 조사 등)
	임업적 방제 또는 천적 방사	전년도 피해목 발생본수 대비 당해 연도 피해목 발생본수, 미실행지 피해목 발생본수(대조구 설정)
	끈끈이롤트랩	포획 해충 개체 밀도, 피해목 발생률 등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43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 것

나. 인력

1) 연구 인력을 3명 이상(상근 1명 이상) 갖추 것

2) 연구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림재난방지 분야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가)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재난방지 연구개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산림재난방지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시설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산림재난방지 분야 분석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산림재난방지 및 관련분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을 갖추 것. 다만, 이러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재난방지 및 관련분야 분석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분석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불놓기 허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구역 면적	m ²		
목적			
기간	. . . ~ . . .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인접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여부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놓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결재
	→ 허가증	→ 발급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제 호

불놓기 허가증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구역 면적	m ²	
목적		
기간	. . . ~ . . .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직인

유의사항

- 바람이 부는 날은 불놓기를 금지합니다.
-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불놓기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불을 놓는 경우 산불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유지하시고, 인접한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불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불놓기 허가 상황 통지서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귀하의 인접토지에 다음과 같이 불놓기 허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련 번호	허가 일자	허가 장소	허가 면적(㎡)	허가 목적	불놓기 기간	허가를 받은 사람	
						성명	주소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²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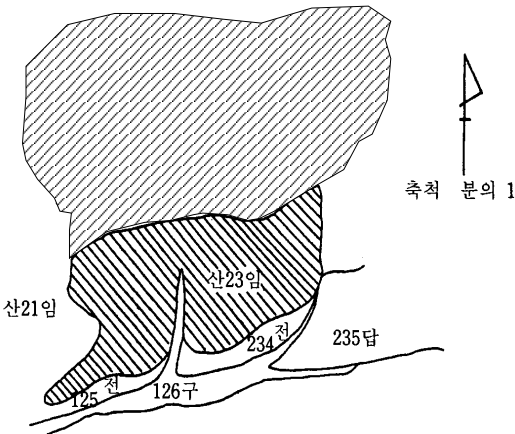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변경·해제 대장

[illegible]

번호: 년도 제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변경·해제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유역면적

※ 위 그림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임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안전조치 명령서

명령 받을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시설·토지	지번(면적)	(m ²)
현지점검 결과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안전조치 명령이유		
안전조치 개요	안전조치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 기한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시설(토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시고, 첨부한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직인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통 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시설·토지	지번(면적)	(m ²)
안전조치 결 과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	수수료 없음
------	----------------------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시 가. 발 화 일 시:
나. 주불진화종료:
다. 잔불진화종료:
라. 뒷불감시종료:

2. 장소: (GPS 좌표)

- 발화 지점:
- 입산통제구역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3. 소유 구분: ()

4. 발생 원인:

5. 피해 상황: 피해액 계(천원)

가. 산림 피해

피해 면적	수종	가슴높이지름	나무높이	본수	수량	입목 피해
ha		cm	m	본	m ³	천원

나. 산림 외 피해

피해 구분	피해 수량	피해 금액
		천원

6. 동원 인원: 계 명(공무원 , 진화대원 , 경찰 , 소방대 , 군인 , 그 밖의 인원)

- 진화대원(전문 , 공중 , 비상 , 보조), 소방대(소방 , 의용소방)

7. 가해자(성별/나이/직업/거주지):

8. 산불 발생 신고인

가. 신고시간:

나. 신고인:

9. 진화지휘자:

10. 동원 장비(헬기는 소속 구분을 명확히 기재):

11. 뒷불감시 책임자: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14. 그 밖의 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일시: 월·일과 시·분까지 기재(진화단계별 구분 기재)
 - 가. 주불: 계속적으로 확산·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불의 기세가 센 불
 - 나. 잔불: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 있는 불로서 비교적 불의 기세가 약한 불
 - 다. 뒷불감시: 산불이 진화된 후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진화선을 순찰하며 불씨를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
2. 장소: 최초 발생지점의 행정구역명과 산 지번을 기재하고, ()안에는 산 이름, 주변사찰 이름, 공원구역, 섬, 도시근교 등 특기사항을 기재
3. 소유 구분: 국·공·사유림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안에는 소관을 기재
4.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 추정, 미상 등 막연한 표현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 가. 입산자 실화: 가해자(등산객, 산악초 채취자 등) 및 행위(담뱃불, 모닥불, 취사행위 등) 등을 규명한 후 세부 내용을 ()내에 기재
 - 나. 논·밭두렁 태우기: 논두렁 태우기 또는 밭두렁 태우기로 구분하여 기재
 - 다. 농산폐기물 태우기: 폐비닐, 과수원폐기물, 벚짖, 고춧대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라. 쓰레기 태우기: 의류 조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에 기재
 - 마. 담뱃불 실화: 행인, 차량 등의 담뱃불 투기에 의한 발화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바. 성묘객 실화: 성묘객 취사행위, 유품 조각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사. 어린이 불장난: 쥐불놀이, 모닥불, 성냥·라이터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아. 건축물 실화: 주택·축사·공장화재, 주택 전기누전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자. 산업현장 실화: 전기·도로·철도 공사장 용접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차. 군사훈련: 군 사격장, 군 야영장, 폭발물 처리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카. 기상예 따른 산불: 낙뢰 등 구체적 내용을 ()안에 기재
 - 타. 방화: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놓은 경우
 - 파. 원인 미상: 산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하. 그 밖의 경우: 행위자 및 행위를 정확히 규명·추정하여 기재
5. 피해 상황: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불 발생 및 피해 보고 요령에 따라 산림 피해 및 산림 외 피해 상황을 기재
6. 동원 인원: 진화대원은 전문·공중·지상 및 보조 진화대로 구분하여 기재
7. 가해자: 성명·주소·연령·성별·직업 등을 조사하고, 가해자 사망 시 사망 원인, 부상 원인 등을 기재
8. 산불 발생 신고인: 산불을 최초로 신고한 시간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9. 진화지휘자: 중·소형 산불, 대형 산불 단계별로 통합지휘본부장을 기재
10. 동원 장비: 헬기(산림청, 소방, 군, 임차), 진화차, 소방차, 기계장비 등 수량을 기재
11. 뒷불감시 책임자: 뒷불감시조 책임자(공무원)를 기재
12. 뒷불감시 조치사항: 뒷불감시조 편성사항을 기재
1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결과: 구성·운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기재
14. 그 밖의 사항: 특기할 사항 등을 기재

제 호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합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 (의무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방제대상	수량(본)
	면적(ha)
	소재지
방제기간	. . . ~ . . . (일간)
방제방법	[]벌채 []훈증 []소각 []파쇄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 내용 (자세하게 서술)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서를 받고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같은 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소
방제대상 및 시행	수종 및 수량(본)
	면적(ha)
	방제사업 시행자
방제기간	. . . ~(일간)
방제방법 (해당 각항 표기)	[]벌채 []훈증 []소각 []파쇄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기타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제 설계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계획서 제출 신청인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적정여부 승인
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군·구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신청인	성명				
	주소				
방제완료 내용	방제 방법별	계획	실적	적합여부	비고
방제기간	. . . ~(일간)				
기타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처리절차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

- [] 이동 제한
[] 사용 금지
[] 곤충 등 동물의 방제
[] 유통·판매 제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방제대상 및 시행	수종 및 수량(본)		
	면적(ha)		
	방제사업 시행자		
방제기간	. . . ~(일간)		
기타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처리절차			
계획서 제출 신청인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적정여부 승인
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군·구			

토지사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동의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자 소유 토지(권리) 현황

번호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1				
2				
3				
4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 피해 복구와 관련한 산사태등 복구 기간 및 방법, 피해현황 및 복구 필요성, 복구에 편입이 예상되는 토지의 면적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래의 본인 소유 토지(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산림재난방지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구분란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동의자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습니다.
- 지목/용도란에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를 적습니다.
- 동의자 소유 토지(권리)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해야 합니다.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

운항 목적	
운항 일시	
운항 지역	
산림항공기 종류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2. 화물명세 또는 탑승자명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수수료 없음
------	--	-----------

탑승자 서약서

탑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림항공기 탑승 시 안전규정과 조종사 등 관계자의 안전지시를 준수하고, 본인의 탑승을 허락하여 준 산림청에 대하여 비행 중 어떠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의 일신상 사고나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산림항공기를 탑승하고 취재한 영상물(사진, VTR 등)에 대해 산림청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요청할 때에는 무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취재 내용 중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비행지시서

기간	
지역	
임무	
산림항공기 종류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 비행을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속)	전화번호	
사상 구분	[] 사망 [] 부상		
연월일	. . .		
장소			
경위			
보상금 청구금액	금	원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사상자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현지 조사	→ 사상자 확인	→ 지급 결정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				

포상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 분	[] 통보, [] 체포, [] 압류		
통보·체포·압류 일자			
통보 기관			
내용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연 락 처	(042) 481 - 4279